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

의안 번호	1892
----------	------

제안일자 : 2009. 9 . .
제안자 : 정승현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중소자영업자와 소규모 점포의 몰락은 물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이 현실임.
- 지역 내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한하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최근 인천, 수원, 성남, 청주, 마산시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인 소규모 영세점포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음.
- 현재 우리시에는 롯데, 삼성, 이마트, 그리고 대형종합상가 등 총 29개소의 대형마트와 3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소기업청 권한이었던 사업조정권한을 지난 8월5일부터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의 반발이 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임.
- 즉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대로 두고 조정권한만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해서 소규모 영세점포를 비롯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을 것임.
-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하여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중소기업자와 소규모 점포의 몰락은 물론, 지역자본의 외부유출 및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29개소의 대형마트와 3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체와 영세점포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 또한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주변 소매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폐업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하고 2009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대로 두고 사업조정 권한만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해서 소규모 영세점포를 비롯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절차, 영업품목, 영업시간, 의무휴무일수 지정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대형 유통업체외 지역의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09년 9월 2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건의처 : 청와대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한나라당대표, 민주당 대표,
지식경제부장관,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이화수, 국회의원 강명순